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5321504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임다훈, 장창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경익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29,673원 및 그 중 49,613,795원에 대하여 2024. 1. 13.부터 2024. 3.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60,000,000원을 여신기간을 2016. 12. 9.부터 2017. 12. 9.까지, 대출이자율은 금융채 6개월물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로(금리변동 주기 6개월), 연체이율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에는 연 6%,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연 7%,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8%를 연체 가산금리로 더하되, 최고 연 15% 이내로 적용하기로 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7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11.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8회합5026호), 그 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원금과 회생개시 전 이자의 70%는 주식(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으로 출자전환하여 지급하며(출자전환액 40,937,920원), 30%는 현금 변제하며(현금 변제액 17,544,823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고, 위 현금 변제액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제출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0. 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관하여 변제에 갈음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져 신주(4,093주)가 발행되었다가, 주식 병합(비율 10:1)으로 최종적으로 409주가 원고에 귀속되었다.

라. 2024. 1. 12.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81,529,673원(= 원금 49,613,795원 + 이자 및 지연이자 등 31,915,878원)이다(소외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른 2022년도 변제액 1,754,482원, 2023년도 변제액 2,631,723원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24. 1. 12.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81,529,673원 및 그 중 원금 49,613,79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4. 1. 13.부터 2024.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4. 3.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민법 제430조),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보증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채무자인 회생회사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실시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회생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회생회사의 기업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자에 대한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기존 주주의 구 주식과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회생채권자의 주식의 병합에 의한 자본감소를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다20068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회생계획의 출자전환에 따라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인수한 신주(4,093주)의 시가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증거가 없으므로,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피고의 보증채무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세